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83
----------	------

발의연월일 : 2023. 3. 27.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박영동 의원,
이연숙 의원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18.11)에서 권고한 사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군의회에 동의·보고를 구하는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규정(안 제4조)
- 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의무 신설(안 제4조의2)
- 다. 군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3)
- 라. 수탁기관 사무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 신설(안 제12조)
- 마.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문책요구, 감사결과 공개의무 신설(안 제14조)
- 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평가 규정 신설(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달성군수”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규정된” 을 “규정된 대구광역시” 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및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6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개의” 를 “개의(開議)” 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상위 법령” 을 “상위법령” 으로 한다.

제9조 중 “대한 운영평가” 를 “대해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휘·감독)” 을 “(지도·감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하는 위탁사무 또는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 제1항제3호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을 “제12조에 따른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u>달성군수</u>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u>달성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u>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u>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 ----- <u>대구광역시 달성군수</u> ----- ----- ----- ----- ----- -----.</p> <p>제2조(정의) ----- -----.</p> <p>1. ----- <u>규정</u> <u>된 대구광역시</u> ----- -----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u>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u>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중</p>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 설>

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신 설>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
탁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
간 만료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및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

----- 제6조에 따른 -----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개의(開議)-----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⑦(생략)

제8조(협약체결 등) ①(생략)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계약)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2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⑦(현행과 같음)

제8조(협약체결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상위법령 -----.

제9조(재계약) -----
----- 대해 제 15조에 따른 성과평가-----.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5조(협약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하는 위탁사무 또는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해지 등) ① -----

-----.

해지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생략)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에 따른 지도·감독-----

4.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제1호에 따라 -----

-----.

③ ----- 제3호에 따라 -----

-----.

④ ----- 제1항에 따라 -----

-----.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